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8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6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안 제1조 및 제2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첨부서류(안 제3조)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안 제4조)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7조)
- 영업신고 표시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¹⁾의 영업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대해,
 - 안 제4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이에 대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한 구청장의 지정 여부 결정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1) 음식판매자동차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14호에 명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교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함.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금천구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및 그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 안 제8조에서는 영업신고 표시 부착에 대하여,
 - 안 제9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 8. 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유원시설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해지고 이후 관광지 등으로 영업장소가 확대되면서 2015. 10. 21.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추가되었으며 2017. 12. 2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또한, 2018. 1. 9.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대상자의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이에 본 조례안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²⁾에서 위임

2)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미 시행중인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금천구에는 12대의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신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208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금천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설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희망자의 사업실패 우려,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장벽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